

3件에 6억600만원이 計上되었으며 이 中에는 多大1洞 해양경찰청 주변 도로정비에 5억500만원, 街路燈 設置가 2件 등이 反映되었습니다.

그리고 小規模 住民宿願事業은 總 19件에 5억 2,400만원으로서 各 洞別로 한件 내지 두件씩 高루 反映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事業別 內容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社會福祉費 等에 관한 事業內譯이 되겠습니다.

이 社會福祉費 等 事業은 總 7件에 1억4,300만원이 計上되었으며 이 中에는 敬老堂 新築設計에 300만원, 山地 樹木植栽에 6,500만원 그리고 방화선 설치비에 3,000만원 등이 反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特別會計 豫算입니다.

먼저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는 4억6,320만4,000원이 增加되어 總 豫算額은 20억3,0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歲入은 國·市費補助金이 追加되었고 歲出은 醫療保護 患者診療費가 追加計上 되었습니다.

그 다음 駐車場 特別會計는 駐·停車 團要員의 人件費 等이 다소 增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今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대단히 感謝합니다.

(參 照)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끝에 실음)

○議長 金三顯 成鍾珉 企劃監査室長 수고했습니다.

本 豫算案은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여 充分한 審査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康貞順議員 外4人發議)

(16時20分)

○議長 金三顯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한 康貞順 議員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康貞順議員 康貞順 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件은 94年9月16日 各 常任委員會와 協議하여 提出된 것입니다.

提案理由 等を 말씀드리면 地方自治法 第50條 第2項과 沙下區議會委員會條例 第7條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94年度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審査活動으로 合理的인 財源調整과 區政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7名の 議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委員 選任은 總務社會産業委員會에서 白盛守, 崔震坂, 金亨鎬, 崔震斗 議員, 都市委員會에서 金喜正, 張昌祚, 李石來 議員을 豫算決算特別委員으로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췌록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254

발의년월일: 1994. 9. 16

발 의 자: 강정순의원외4인

□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 제안이유

사하구청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정수 : 7명

○ 각 상임위원회별 배분 : 총무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위원회 3명

○ 위원선임

▶ 총무사회산업위원회 : 백성수, 최진관, 김형호, 최진두의원

▶ 도시위원회 : 조용근, 장창조, 이석래의원

○議長 金三顯 康貞順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은 康貞順 議員이 提案한 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異議가 없으므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1994年度中期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長提出)

(16時22分)

○議長 金三顯 議事日程 第5項 1994年度中期財政計劃報告의件을 上程합니다.

中期財政計劃에 대하여 成鍾珪 企劃監查室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查室長 成鍾珪 企劃監查室長 成鍾珪

입니다.

지금부터 今年度 中期財政計劃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各 議員님께서는 油印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中期財政計劃의 概要와 中期財政與件 및 重點投資方向, 그리고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計劃, 中期財政計劃의 運營順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計劃樹立의 目標 및 方向입니다.

基本目標는 新經濟 達成을 위한 地方財政의 役割과 그 責任強化에 두고 新經濟 計劃과 地方開發計劃과의 조화를 維持하고 또한 計劃 財政運營의 體制를 정착하는 동시에 合理的인 財源의 조달 및 배분으로 投資의 效率性을 確保하는데 重點을 두었으며 그 다음 計劃樹立의 方向은 變化된 與件을 反映하여 93年度 計劃을 연동화 수정보완 하였으며 上位計劃 및 分野別 中·長期 發展計劃과 연계를 시킴으로써 計劃運營의 實效性을 確保하도록 하였습니

다음은 6페이지의 中期財政計劃의 樹立根據가 되겠습니다.

이 根據는 地方財政法 第16條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計劃의 期間 및 性格을 보면 計劃期間은 今年度부터 98년까지 5個年 동안이며 今年度를 基準年度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年度는 當該年度 豫算이며 95年度는 翌年度 豫算編成의 基準이 되고 96年度에서 98年은 計劃의 性格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計劃樹立體系는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本 計劃의 主要內容은 分野別 政策目標 및 發展指標을 設定하고 財政展望을 추계하여 投資計劃의 樹立 및 투자 우선순위를 審議, 選定하고 또한 不足財源에 대하여는 조달대책을 강